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6. 7.]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25호, 2024. 6. 7., 일부개정.]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 062-530-596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남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근거 및 방법) ① 전남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전남대학교 학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6. 7.>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탁단체의 정관 등으로 정하게 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2명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4. “후보자”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강사”란 전업강사로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8. “직원”이란 「대학에 두는 직원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정원표를 적용받는 직원을 말한다.
9. “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교로서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10. “학생”이란 전남대학교의 대학·학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1. “관할위원회”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 제81조(시행규칙)에 따라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2.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13.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4. “선거운동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개정 2024.6.7.>

제4조(위원의 임명) ① 총장은 그 임기 만료 150일 전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선거입후보를 위하여 그 직을 사임한 때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직무대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전남대학교 소속의 교원 16명, 강사 1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2명 그리고 외부인사 4명, 졸업생 1명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4. 6. 7.>

1. 교수평의회 의장·부의장
2. 교수회 수석부회장
3.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7명(여성 3명 이상)
4. 교수평의회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교원 6명(여성 3명 이상)
5. 강사단체에서 추천하는 강사 1명
6. 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2명
7. 조교노조에서 추천하는 조교 1명
8.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2명
9.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2명
10. 교수평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11.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졸업생 1명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6. 7.>

1. 전남대학교 학무회의 구성원

2. 휴직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년 또는 장·단기 파견근무 중인 교직원 및 조교
3. 징계절차 중이거나 징계 중인 교직원(교원, 직원, 조교)
4. 휴학·정학 중인 학생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교수평의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수평의회 부의장이 이 규정에서 정한 교수평의회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추천위원회의 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7.>

1. 선거의 관리(관할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운동 일체에 관한 위반행위 감시
3.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와의 협의
4.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5.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6.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7.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 및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수평의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와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총장이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시설 등을 총장이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추천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추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추천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추천소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 중 약간 명을 추천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7.>

1. 제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제5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2호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위원 본인,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또는 그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후보자가 된 경우
6. 제4조에 근거하여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전남대학교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의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하며, 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해임한다.

제11조(위원의 보궐) ① 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궐위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그 해임·사임 일부터 2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일 후에 그 해임·사임이 있는 경우 그 해임·사임 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교수평의회 의장·부의장이 해임 또는 사임한 때에는 교수평의회 상임이사가 위원이 되며, 보임순서는 교수평의회 규정 제7조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③ 당연직 위원인 교수회 수석부회장이 해임 또는 사임한 때에는 교수회 부회장이 위원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그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기피 신청 전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추천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 추천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강사·직원·조교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휴직·정직 중이 아닌 강사
2. 휴직·정직·파견 중이 아닌 직원
3. 휴직·정직 중이 아닌 조교
4. 휴학·정학 중이 아닌 대학·학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선거인으로 선정된 학생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인 대상, 선거인 수, 선거결과 산정 및 선거인 결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다음 제1호, 제2호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4. 6. 7.>

1. 전남대학교 교원인 총장, 교수, 부교수
2.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제14조제1항의 교원선거인 중 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3. 후보자 등록 당시 총장의 임기 만료 다음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다만, 이 규정 제17조제2호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전남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윤리위반, 성희롱·성폭행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총장 등의 후보자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총장의 임기 만료 180일 전(임기 중 궐위가 생겨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총장·부총장
2. 교수평의회 의장·부의장
3. 각 대학원장·부원장
4. 학장·부학장
5. 처장·부처장
- 5의2. 사무국장
6. 병원장·진료처장·진료부장(학동, 화순, 빛고을, 치과)
7. 위 각호에 준하는 직을 가진 사람[별표 1]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 등록

제17조(선거관리의 위탁) 관할위원회에 대한 선거관리의 위탁은 총장이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임기 만료의 선거 :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18조(선거일 등의 협의)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내에서 선거일을 정한다. <개정 2024. 6. 7.>

1.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 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②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확정일 및 그 열람기간, 투표소의 수 및 설치장소, 투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6. 7.>
- ③ 선거기간은 14일 이상 1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추천위원회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6. 7.>

제19조(선거 공고) ① 선거 공고는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하되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위원회와 협의한다. <개정 2024. 6. 7.>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온라인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및 기일에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강사·직원·조교·학생 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그 등본 1통을 각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학내에 공지하고,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위원회·이의신청자·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⑥ 추천위원회가 수집한 선거인명부는 당선인의 임기까지 보관하며,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폐기한다. <개정 2024. 6. 7.>

제21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기간(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기탁금 완납 영수증
3.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제15조제1항제2호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제16조의 보직 사퇴서(해당자에 한함)

② 관할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가 발행한 접수증과 후보자 등록 신청서(첨부 서류는 제외한다)의 각 사본 1부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이력서
2. 공정행위 서약서
3. 공약준수 서약서
4. 소견서 및 공약사항
5.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제28조제3항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교내 및 선거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24. 6. 7.>

⑥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⑦ 제15조제1항제2호의 외부인사로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한 추천서를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3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총장에게 반환하여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에 기탁금 납부자의 명의로 귀속시킨다. <개정 2024. 6. 7.>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5장 선거운동

제23조(선거운동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 ② 후보자와 선거인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5. 전화(문자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한다)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공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게재하여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대학관 및 총장관

5. 소견서 및 공약사항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검인함에 있어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선거공보를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관할위원회가 발송하는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⑥ 후보자가 제1항에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⑦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관할위원회가 공고하고, 그 공고문을 교내 및 선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⑨ 선거공보의 규격·면수·작성수량·제출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의 합동연설회 및 3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제28조제3항의 방법으로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공개토론회의 동영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④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메시지 등은 제외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② 후보자는 제1항제1호·제2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2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추천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선거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음성, 화상, 동영상 메시지 등을 제외한 글·그림·사진·이미지 정보에 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정책 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선거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 자질, 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와 선거인은 선거홈페이지 외에 총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학외 정보통신망(블로그, 페이스북, 그 밖의 SNS상의 개인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6. 7.>

⑤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 화상, 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선거홈페이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전남대학교의 지정된 장소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때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선거벽보의 작성수량·첩부수량·규격·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소형인쇄물 배부 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형인쇄물을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대학우편함 이용 방법을 포함한다)으로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형인쇄물의 작성수량·규격·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선거인의 지지 호소 등) ① 선거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전화·문자메시지), 제28조제1항제2호(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제28조제2항의 선거홈페이지에 글·화상·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② 선거인이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전화·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전남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든지 제24조제1항의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선거홈페이지 및 학내 정보통신망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논평을 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제32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총장 및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정한 사람 또는 간부급 직원(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은 그 소속·담당하는 기관, 부서, 실, 팀 등에 속한 교원·강사, 직원, 조교, 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2(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금지)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목적 및 낙선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

리하게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6. 7.]

1.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경력·학력·학위·상별 말함)·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제33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제2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위원회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개정 2024. 6. 7.>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위원회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

제34조(투표·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위원회와 협의한다. <개정 2024. 6. 7.>

②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요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위원회의 직권 상급선관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35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 또는 온라인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개정 2024. 6. 7.>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비밀의 방법으로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개정 2024. 6. 7.>

③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의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6조(투표·개표의 참관)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의 투표·개표의 참관, 개표관람은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37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순위득표를 한 후보자로 선정하며, 그 선정순위는 득표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② 제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차순위 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남대학교 장기근속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4. 6. 7.>

③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 및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를 결선투표의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4. 6. 7.>

④ 제3항의 제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선투표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4. 6. 7.>

⑤ 결선투표에서 최다득표 및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며, 그 선정순위는 득표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4. 6. 7.>

⑥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선정순위는 제1차 투표의 득표수에 따르고, 제1차 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때에는 전남대학교 장기근속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 6. 7.>

⑦ 제1차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결선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4. 6. 7.>

제38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추천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정해진 최종 후보자 2명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지체 없이 그 순위와 득표수를 명기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전남대학교 내에 공고한다.

제38조의2(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에 관한 여론조사) ① 추천위원회는 제42조에 따라 총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추천할 때에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2순위 후보자 임용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여론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선거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39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일 등을 정한

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6. 7.>

제40조(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선정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남대학교 내에 공고한다.

제41조(연구윤리검증 및 선정취소) ① 추천위원회는 제38조에 따른 선정공고 후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2007년 2월 이후 연구실적 등에 대해 표절 등 연구윤리 저촉 여부의 검증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으며, 이 검증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6. 7.>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을 종료하면 그 검증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4. 6. 7.>

⑤ 총장임용후보자는 제4항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추천위원회에서 소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⑥ 추천위원회가 제4항의 그 검증결과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검증과가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해당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취소된 다. <개정 2024. 6. 7.>

⑦ 추천위원회는 제6항의 선정취소 사유를 지체 없이 전남대학교 내에 공고한다. <개정 2024. 6. 7.>

⑧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총장에게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통보

한다. <개정 2024. 6. 7.>

제42조(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제41조제8항의 통보를 받은 총장은 임기 만료일 30일 전(궐위선거를 한 경우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그 선정 결과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전남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43조(선정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다. <개정 2024. 6. 7.>

1. 총장임용후보자 2명 중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취소 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 중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취소된 경우에는 제1·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가 정해진 차수의 투표에서 차순위 득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 차순위 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남대학교 장기근속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차순위 득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1·2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정해진 차수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취소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 2명 모두가 선정취소에 해당된 경우와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2명이어서 제3순위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선거의 경우에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6. 7.>

제7장 보칙

제44조(수당 등)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추천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추천위원회 외부 인사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시행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02025호, 2024. 6.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